

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5월 7일

나. 제출자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5월 17일

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방 주 문

나. 제안이유

- 미래성장 선도산업 육성,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 단위 기구 신설 및 조직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한 기능 재배치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으로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에 따라 국(局) 신설을 통한 국장 통솔기능 및 책임성 강화

다. 주요내용

- 국 단위: 증 1
 - 신 설: 미래교육돌봄국, 첨단산업국
 - 직제변경: 평생학습원(4급→5급)

- 명칭변경
 - 미래도시기획실→기획조정실, 경제산업국→경제국, 상하수도사업소→상하수도사업본부
- 과 단위: 증감없음
 - 신 설: 투자유치과, 반도체방산과, 전략산업과, 아시아육상추진단(한시기구), 어르신복지과, 장애인복지과, 농촌활력과
 - 통 합: 산단혁신과, 관광인프라과, 체육시설관리과, 노인장애인과, 도시재생과,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, 노인종합복지관
 - 명칭변경
 - 기업투자과→기업지원과, 낭만축제과→낭만관광과, 식품위생과→위생과, 아동친화과→아이돌봄과, 가족보육과→가족정책과, 건축과→건축디자인과, 공동주택과→주택과, 유통특작과→농식품산업과, 보건행정과→보건의료정책과
- 기존 한시기구(미래도시기획실) 존속기한 삭제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 및 제13조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정원 증가 없이 실국장 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산업, 교육, 복지, 농업분야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구미시로 재창조될 것으로 기대되며,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